

『퇴직연금 정기에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에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4. “디폴트옵션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에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1.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만기 시까지 적용
2. 디폴트옵션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제도의 정기에금으로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만기 시까지 적용

제3조 취급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기간

- ① 고정금리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0개월, 3년 또는 5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디폴트옵션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자

- ① 이 예금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를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썸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이자

- ① 만기일 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금리로 썸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 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금리로 썸하여 지급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급여이전 포함)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2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
 -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
 - 다.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라. 수탁자의 사임
 4.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

5.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
6. 가입자 사망
7. 연금 지급
8.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개인형IRP에 한함)
9.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 IRP에 한함)
10.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중도해지금리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한 중도해지 이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적용금리 ^{주)}
3개월 미만	3개월 만기 금리
3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만기 금리
6개월 ~ 1년 미만	1년 만기 금리
1년 이상	경과기간별 금리

주)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제8조 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1.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 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 금리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예치 하지 않습니다.
 - 가. 예금주가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 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의4」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2.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제8조의2 재예치 기준일

이 예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제9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 ③ 만기일전 분할 해지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0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통장발급,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예금자보호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0년 12월 3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재예치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 제8조 재예치는 2011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 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8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특약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